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성명>

##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으로 송두율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재판부가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남용 현실에 경고를 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무죄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혹시' 하던 마음이 '역시' 하는 실망으로 바뀌고 만다.

시대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법원의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판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법률을 변화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점을 생각할 때 법원이 인권악법을 사문화시키는 판결을 내리면 인권은 지켜지고 민주주의는 튼튼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결론이다.

법원은 사문화시키는 방향의 판결을 내기기는커녕 검찰 못지 않는 완고한 보수성을 드러내는 비극적인 현실, 바로 이 현실이 개탄스러운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북 학술회의 개최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판결을 한 것이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북과 교류를 위해 통과의례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송교수가 북한의 노동당에 가입하고 북은 방문하고 남은 방문하지 못한 역사 자체가 민족의 비극이다.

더 이상 비극적 현실에서 파생한 이픔을 들추어 상처를 덧나게 하지 말고 이제 화해와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사회의 극우·보수세력과 이견을 가졌던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함께 민족공동체, 나아가 평화통일 공동체를 일구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더욱이 남북이 화해하고 경의선을 연결하고 북의 거물급 인물들이 서울을 방문하고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는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재판부의 냉전적인 판결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원의 이름으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평화통일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유엔에서도 폐지 권고를 했고 세계 인권 대회에서도 폐지요구를 했으며 국민의 80% 이상이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재판부의 수구·보수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둘째, 재판부는 송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되었다는 혐의를 주장하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주장하는 황장엽씨의 전문진술과 국정원의 '대북보고문 파일'이라는 것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건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있다.

이 파일의 내용은 '독인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공작원으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망명한 김정 필씨가 송씨의 동향을 파악해 북에 보고한 것'이라고 한다. 그 파일을 '독일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활동을 하다 1998년 10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자수하고 귀국한 최모씨가 김씨를 통해 입수한 것'이라고 한다.

최씨는 "김씨의 컴퓨터와 자신의 것을 바꿔 사용하다 이 파일을 입수했으며 디스켓 두장에 파일을 복사해 국정원에 제출했다"고 법정 진술했다고 한다. 최씨는 "이 파일을 통해 송씨가 거물급 친북 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 생각할 때 컴퓨터를 바꿔사용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또한 복사과정에서 얼마든지 위조편집이 가능한 걸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 근본적인 문제는 황장엽씨도 최씨라는 사람도 자신의 사상을 버리고 사상 전향을 하거나 자수를 한 사람이다. 그들은 개관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재판부가 사상전향을 한 사람들의 말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2심 재판부는 인권과 남북화해를 위해 송두율 교수를 무죄판결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또 송교수가 고령에다 지병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당장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http://www.antikukbo.net> )  
( [samin2002@dreamwiz.com](mailto:samin2002@dreamwiz.com) )  
전화: 2232-4086-7 팩스: 2253-5648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송두울 교수 중죄 선고를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한 이땅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없다. -**

결국 법원은 송두울 교수에게 징역 7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침통한 심정을 가눌수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절차적으로나마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땅의 수많은 양심적인 시민학생노동자를 고문하고 죽였던 국가보안법은 50년이 넘도록 여전히 건재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학술회의 개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저술활동은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라며 유죄로 판단하는 이중적 판결을 내렸다.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냉전반공주의 논리에 사로잡힌 모순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체제의 유지'에 방점을 찍어 양심적인 학자의 활동을 범죄시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유엔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이런 원칙 하에 국제 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고국을 찾은 송두울 교수를 차가운 감옥이 맞게 되었다.

지금은 여전히 반민주, 반인권의 시대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땅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없다.

우리는 송두울 교수가 무죄 석방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이땅의 양심적인 시민학생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4년 3월 3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송두울 교수 징역 선고 규탄 성명서>

## ■ 국가보안법 없는 17대 국회 건설하여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실현하자!!

서울지법 형사24부는 30일 오전 10시 송두울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가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자주와 통일이 대세가 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전국민의 촛불이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국가보안법은 송두울 교수 뿐만이 아니라 한총련 학생들을 비롯한 애국적인 사람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가로막아 나르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사회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분단의 망령인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사상,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으며, 보수우익세력들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무기가 되어 민주애국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민주화의 촛불로 한국사회가 환하게 밝혀지고 있는 지금 시기, 한총련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끊임없이 연행이 되고, 송두울 교수와 같은 애국적 양심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현실은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이익을 반하고,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역행하는 세력들의 무기라는 것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법부는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국민들의 무엇을 바라는지를 똑똑히 보고, 무엇을 외치는지를 정확히 들어야 한다. 사법부가 지금 심판해야 할 것은 송두울 교수와 같은 애국적 학자가 아니라 민의를 저버리고 정치쿠데타를 일으킨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16대 국회이다. 사법부는 당장 송두울 교수에 대한 구형을 철회하고, 감옥 안에 있는 수많은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진짜 역적놈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구시대의 유물, 낡은 정치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가 짓밟힐 수 없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 17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은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죽음으로 내몬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여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바라는 각계각층 국민들과 힘을 합쳐 4.15 총선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는 세력들을 심판하고, 국가보안법 없는 17대 국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할 것이다!!

-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무기한 농성단 -



<민주노동당 논평>

## 재판부는 언제쯤 국가보안법과 결별하나

고국이 그리워 자진 귀국한 송두울 교수에게 재판부가 결국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학문의 편향성과 친북세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송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며 제시한 증거는 고작 황장엽의 진술과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추상적 판단뿐이었다. 뚜렷한 물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냉전논리에 쩌들어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상상으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남북화해의 시대와 전혀 조응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의 굴레에 얽매어 있는 대한민국 재판부의 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모순된 판결을 연발하는 재판부의 자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2심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를 바란다.<끝>

부대변인 김 배 곤

<보도자료>

**송두울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100 - 809 서울시 송구 명동 2가 1-19

전화 : 777-0641 ~3 팩스 : 775-6267 메일 : chrc@chol.com 홈페이지 : <http://www.freesongjinbo.net>

문서번호 : 04-0602-01

수신 :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 단체

발신 : 송두울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제목 : **송두울교수 사건에 대한 재외유학생 연구자 서명**

날짜 : 2004년 6월 2일

담당 : 전주교 인권위원회 이은희 (02-777-0641, silverly@jinbo.net)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 기자분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송두울교수에 대한 1심 공판이 끝난 후 국내외에서 1심 판결을 규탄하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사회인사들의 서명에 이어 175명의 재외 유학생과 연구자들이 송두울교수에 대한 결의 및 탄원서를 보내왔습니다. 재외 유학생과 연구자들은 이번 1차 서명후에도 계속해서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결의 및 탄원서를 재판부와 변호인단에 보낼 예정입니다.
3. 재외 유학생과 연구자들은 이번 결의 및 탄원서에서 △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본원리 중의 하나임에 모두가 동의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헌법과 헌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핵심은 자신 혹은 다중(多衆)의 생각과 다른 의견들에 대한 관용이며, 이러한 학문적 관용의 토양 위에서만 학문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 서명인들이 모두 송두울 교수의 학문적 의견에 반드시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송두울 교수의 학술 활동과 관련된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 △ 송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학문과 연구의 자유, 나아가 한국의 학술 발전 자체에 이미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대책위에서는 2차 공판을 앞두고 6월 2일(수)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송두울 교수 사건에 대한 재외 유학생 연구자 서명을 알리고 송두울 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언론의 보도와 각 단체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송두울 교수 사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서

아래에 서명한 재외 유학생 및 연구자 175인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울 교수 사건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고자 이 글을 보냅니다. 우리는, 2004년 3월 30일 송두울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2심 재판부에 송 교수의 무죄석방을 탄원하는 바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본원리 중의 하나임에 모두가 동의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헌법과 헌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핵심은 자신 혹은 다중(多衆)의 생각과 다른 의견들에 대한 관용이며, 이러한 학문적 관용의 토양 위에서만 학문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서명인들이 모두 송두울 교수의 학문적 의견에 반드시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송두울 교수의 학술 활동과 관련된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송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학문과 연구의 자유, 나아가 한국의 학술 발전 자체에 이미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우리 재외 유학생 및 연구자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송두울 교수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1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의 범 조문에조차 충실하지도 못하고, 헌법적 가치인 학문의 자유를 협애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학술 연구의 내용에 대한 사법당국의 평가와 단죄를 시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학문 검열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을 이 글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만이 우리의 우려와 의문점들을 말끔하게 씻어주고, 더 나아가 이미 훼손된 학문의 자유를 복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려와 의문점들을 이제 하나하나 순서대로 짚어 나가겠습니다.

### 1. 행위에 대한 처벌인가 사상에 대한 처벌인가

법이 지배하는 대상은 오직 인간의 행위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리(公理)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백여 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이 기본적으로 송두울 교수의 학술 활동 및 저서의 내용, 즉 그의 생각과 사상에 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판결은 그가 저술을 발간한 행위라든지 생각을 유포한 행위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송두울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등>의 죄목을 적용하지 않은 사법당국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판결문에서 겉으로 드러난 송 교수의 위법 사항은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가 네 가지로 열거한 그의 범법 사항은 다음의 두 가지로 다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송 교수는 사실상 북한 노동당 간부로서 지도적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고 (<국가보안법 제 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사기미수>), 둘째, 북한을 여행하였고 북한인들과 만난 후 통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 <동법 제8조 회합 통신 등>). 송 교수의 이 범법 행위들을 입증하기 위한 1심 판결문이 하나같이 일관되게 송 교수의 저술 내용에 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법원이 이야기하는 송두율 교수의 첫번째 위법사황은, 그가 1)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이며 (판결문 2-다), 2) 저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북한 노동당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판결문 2-라). 이미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도 증거불충분 판정을 받았고, 나아가 증거능력이 부족한 전문진술(傳聞陳述: hearsay)에 토대하였으므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1)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보여지지만, 이곳에서 그 사실관계를 시비(是非)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1) 그 자체로도 충분히 국가보안법의 해당 조항 위반이 되고도 남는데, 2)를 부가한 재판부의 선택에 우리는 의문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가 "김철수"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고, 또한 동시에 그가 "김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저술활동들은 그가 북한 노동당 요인임을 보여주므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반약 법원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송두율 교수가 "김철수"임이 입증되었으므로 그는 반국가단체구성의 죄를 지었고 (동법 3조), 그의 저술활동은 그 자체로서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하였으므로 (동법 7조) 독립적인 죄가 된다고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송 교수의 글들을 출간, 배포한 국내 우수 언론, 출판사들에게 동일하게 동법 7조를 적용해야 할 것에 대한 검찰과 1심 재판부의 우려를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는다(blind)는 법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혹시나, 송두율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 등의 죄가 적용되지 않은 다른 연유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또한 송 교수가 노동당 요인으로서 활동했다는 법원의 2)항 해당부분 판시(判示)가 송 교수의 저술내용물로서만 가득차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송 교수는 그의 저술에서 북한 노동당과 동일한 주장을 폈고, 따라서 "기타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살펴보더라도 송두율 교수가 학술활동 이외의 북한 노동당의 요인으로서 암약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끝없이 열거되는 그의 많은 저술과 글을 재판부가 읽을 기회가 없었다면, 즉 송두율 교수가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벌인 학자가 아니었다면, 법원은 그가 "김철수"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노동당 요인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모순에 우리는 경악합니다.

우리는 또한 둘째로, 송두율 교수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6조와 8조가 공히 "국가의 존위,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조건을 적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법적용에 의해 침해받는 법이익이 사상과 학술의 자유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이 요구하는 적용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송 교수의 "잠입, 탈출과 회합통신"의 행위가 우리의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나라의 존위와 안전,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송 교수가 그 모든 가치들을 위태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닌 점을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판결문의 해당항목들에서 적시된 학술좌담회 개최, 주체철학 강의 청강, 편지 발송 및 경비수령 등 행위들이, 장소가 북한이고 집속의 대상이 북한 노동당이며, 토론내용의 대부분이 주체철학이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통상적 학술활동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국내외 학술회의에 빈번하게 참석하는 우리로서는 과연 학술회의의 장소, 주최자, 그리고 그곳에서 토론된 내용 중 어느 것이 주요하게 처벌의 기준이 되는지를 일단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상 그 기준이 모호하여 처벌의 기준이 사법당국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송두율 교수가 수령(受領)했다는 \$1,000불을 "공작금"으로 규정하게 하고, 또한 그 중 어느 것이 어느 대학원생이 북한 노동



당보다 훨씬 "급진적인" 브라질 노동당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받은 \$2,500불을 교통 및 숙박비로 규정하게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학술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그 활동의 주최자가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어떤 지역의 누가 주최하는 학술회의를 참가할 것인지를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말에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경계합니다. 만약 장소와 주최자를 불문하고 학술회의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근거가 된다면 법원은 그 판단의 명확한 기준과 함께, 법원이 학술회의의 내용을 토대로 참석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이 냉전시대와 권위주의 정부라는 과거가 우리라는 현재에게 남긴 유산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다수는, 법은 역사적으로 합의되고 형성된 실체로서 나름의 의미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적 지혜를 되새기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그 국가보안법조차도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이중삼중의 모순에 빠져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의 조항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1조 (2)항: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문이 송 교수의 행위보다는 그의 학술활동의 내용, 즉 그의 사상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판결문에서 드러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제, 왜 1심의 판결이 직접적으로 침해한 송두율 교수의 헌법적 기본권, 혹은 국제법상 권익들에 대한 우려를 제쳐놓고,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그토록 호소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 2 학문의 자유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

우리가 이 결의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우리가 송두율 교수와 학술적,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송두율 교수 개인의 신체, 거주 이전, 통신,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들을 옹호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외국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조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 실추를 걱정해서도 아닙니다. 단순한 의협심이 불타올라서도 아니며, 추상적이고 허울뿐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에서 이 결의서를 적습니다. 우리들은 이 머나먼 이방인의 땅에서, 손쉽게 화려하고 이기적이라고 만든 할 수 없는 학문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이 결의서만은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권익이, 혹은 "우리"들의 미래의 권익이 벌써부터 미리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나, 청컨대, 여기서의 "우리" 속에 우리의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나아가 정부와 법원이 제외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우리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인류가 동굴을 나와서 불을 지피고, 언어와 민주주의를 발견하고, 화성에 다다른 오늘이 있기까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향유하기에 앞서, 인류의 지적 활동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항상 선행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상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 인류가 자신에게 닦친 물음과 숙제들에 대한 해답과정이었다는데 동의한다면, 학문활동이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잠재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야 비로소, 왜 대한민국의 헌법이, 표현의 자유와는 구분이 되는 별항으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따로이 적시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알리고 보일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학문과 예술의 진보를 연구자와 예술가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고, 또 그 열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애써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이자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바로 다음 항목이 저작, 발명권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또한 바로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즉, 그런 학문과 예술의 과실을 누림에 있어 그 누리는 절차를 정부에서 하위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연컨대, 학문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임과 동시에 사회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한 국가의 의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질의서에서 시종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가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주지하면서, 우리는 법원의 1심 판결문을 심한 우려의 눈으로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결문 곳곳에서 재판부가 학문의 자유를 얼마나 좁아하게 사고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정부의 삼부(三府) 중 하나인 법원이, 학문의 발전을 장려하고 고민해야 할 정부(즉 법원)의 의무로서 학문의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한의 주체가 되는 신민(臣民)적 권리로써 학문의 자유를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판결문에서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내적 정신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 대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할 때에는 송두율 교수의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합니다. 내면적으로 혼자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법원이 학문의 자유를, 다른 여타의 자유와 아울러 아무런 제약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고, 따라서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학문은 학문이라 부를 수조차 없다는 상식을 우리는 여기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은 각자 의견들이 서로간에 대화와 반응을 교환하면서 거듭날 모양이 마련된 후에야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저해 역부에 대한 판단인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토론은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정부가 대학을 운영하고, 국비장학생을 모집하고, 학술진흥재단을 통해 학자들을 지원하며, 교육전파(電波)를 통해 고등학생 과외까지 떠맡으려 하는 사실들이 단순히 국가가 신민(臣民)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합니다. 정부가 세우는 교육과 연구에 관한 정책들과 국가가 학술진흥에 투자하는 경비는 언제 열매를 맺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열매의 과육을 "우리" 모두가 향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미래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국가로부터의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향한 권리로 이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법원이 이 질의서를 "탄원(歎願)"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부 삼부(三府) 중 하나인 법원에 대해 공공복리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앞서 말한 인류의 성취 하나하나 뒤에는 항상 이름 없는 수많은 이들의 패배와 오류가 깔려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학문적 성취야말로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과 실패와, 더더욱 중요하게는 승자와 패자의 진지한 대화를 먹고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리고 법원이 앞장서서 이 지난(至難)한 과정의 전제조건인 학문적 관용을 말살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정부정책이나 학술지원도 대답없는 메아리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진보, 그리고 그것을 이끈 학문의 크나큰 전진들이 항상 시대의 상식을 거부하는 이단아들에 의해, 혹은 그 이단아들을 설득하려는 학문적 대화에 의해 이뤄져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바로 정확하게 그것이야말로 법원의 1심 판결에 의해 침해받는 범의익인 학문의 자유임을 우리는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부연컨대, 그것은 송두율 개인의 범의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범의익인 것입니다.

### 3. 학문이란 무엇인가, 그 난해한 문제

우리는 1심 재판부가 행한 다음의 두 가지 판단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려 합니다. 첫째, 법원은 송두율 교수의 학술활동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로서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둘째, 송 교수의 연구는 북한과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했으므로, 학문이라 할 수조차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중 두번째 논점부터 토론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법원이 학문의 영역 자체를 규정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반대합니다. 학문과 비(非)학문을 구분짓는 것은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학문이란 무엇인가"라는 난해한 문제를 법원이 대답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책임도, 그리고 능력도 없다는 점입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동시에 동일하게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문득 프랑스의 미술가인 마르셀 뒤샹 (Marcel Duchamp)이 1917년 뉴욕의 어느 미술관에 제출한 작품, 더 구체적으로는 "샘물"이라 작품제목을 붙인 공중변소의 남성 소변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당시 심사위원들은 그 "작품"이 부도덕하고 상스럽다는 이유로 전시 자체를 거부합니다. 또한, 물론 그 "작품"이 현대 미술의 개념 자체를 뒤바꿔놓은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까지는 길고, 지루하고, 험난한 예술가들과 미학자들의 논쟁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송두율 교수의 학술적 연구가 뒤샹의 변기라고도, 혹은 한국의 사회과학을 일거에 전복시킬 중요한 이론이라고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고 한국의 사회과학이 아직 "모르기" 때문, 즉 판단 유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한국의 사회과학과 송 교수의 연구가 진정한 학술적 대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법원이 그 길고, 지루하고, 험난한 대화의 과정을 생략시켜 주었으니,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수고를 덜어준 셈입니다. 마치 20세기 초 미국과 프랑스의 예술가들과 미학자들이 수행했던, 그 길고, 지루하고, 험난한 대화의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법원이 법의 잣대로 "규정"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원이 우리의 할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학문에 종사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길고, 지루하고, 험난한 논쟁의 과정 자체, 그 학문적 대화의 과정 속에서만 살 수 있는 종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나의 의견이 과학이고 당신의 의견



이 영터리 비(非)과학인가하는 논쟁, 왜 이 곳의 논점이 갑자기 이렇게 뛰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우리 내부의 다툼 속에서만 학술과 비학술이, 나은 학술과 모자란 학술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쩌다가 뒤상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송두율이 뒤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우려하는 것은, 그리고 확실한 것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이미 미래의 뒤상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학계가 학술적 오류나 잘못된 결론들에 대해 얼마든지 그 속에서 학문적으로 비판하고 검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학계의 역량에 대해 법원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학문과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定義)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인문학과 사회과학, 나아가 학문전반의 발전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호 대화의 중단과 자기 검열의 시작이란 것은 바로 학문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의 이러한 중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2심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 4.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이론"과 그 현실적 효과

다음으로, 우리는 첫번째 논점인, 송두율 교수의 저술이 실질적이고 꺾기적인 효과로서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했다는 1심 판결에 또한 의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송두율 교수가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이론"을 통해 "...이론적 근거가 없던 ...당시 운동권 학생들(특히 '주체사상파') 사이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소한 법원은 1) 송 교수의 "이론"이 이전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주장이며, 2) 또한 이것이 송 교수가 의도한 실질적 정치적 효과, 예를 들어 "운동권 학생들(특히 '주체사상파')이 이 새로운 "이론"으로 무장하고 전혀 새로운 패턴의 반정부행위 - 반향에 끝나는 것이 아닌 - 를 가져왔으며, 3) 이 새로운 패턴의 행위가 다시, 송 교수의 의도에 따라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저해를 가져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원이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입증한 것을 1심 판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법원, 언론, 및 북한 당국조차 오해하고 있는 "내재적 접근(immanent 혹은 internal approach)"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칸트가 이야기한 전자(前者)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후자(後者)는, 이것을 송두율 교수가 처음으로 주장하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내재적 접근이라는 것은 다만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접하는 태도를 지칭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생물의 호르몬 반응이 어떻게 그 유기체를 보존하는지, 한 나라의 의회가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세부적 기능을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 등은 모두 시스템의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살피는 내재적 접근법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예라 하겠습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아니라, 그 내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각 요소들이 서로서로 충돌하는 것을 밝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재적 접근 혹은 내시적 비판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내재적 접근법이란 것은 전혀 새로운 것도, 놀라운 것도 없는 단순한 연구의 "태도"이며, 엄밀하게 말해서 "이론"이라 부르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송두율 교수가 주장한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은, 다만 송 교수가 북한을 그러한 하나의 일관된 체계, 혹은 시스템으로 보



고, 그곳에 가서 여러 현상들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경험적(immanent)"으로 살피겠다는 선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송두울 교수의 그 선언에 아마 새로운 점이 있었다면, 그는 대한민국 사법당국의 제지없이 그 선언을 직접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합니다. 학자가 자신의 연구대상(북한)을 어떻게(내재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기본적 선언이 과연 범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 1)항이 근거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우리는 만약 남북한 양당국의 각종 제약만 없다면, 북한에 가서 북한을 보고, 경험하고, 공부하겠다는 열망 자체는 아마 북한을 전공하는 학자라면 누구라도 꿈꿔왔을 내용임을 지적하면서, 또한 역시, 1심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운동권 학생들(주체사상파'는 아닌)'이 이미 60년대 초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란 구호를 외쳤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물론 송 교수의 주장이 정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반향"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러왔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패턴의 반정부 행위를 야기했는지를 입증할 부담은 항상 법원과 검찰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위 2)항도 근거없음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 2)항의 행위가 정말 있었고, 그 정치적 결과로서 3)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지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역시 법원이 직접 내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이상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 질서라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지, 공공이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에서 살핀대로 1) 과 2) 항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3)이 논리적으로는 입증될 수 없을 것입니다.

## 5. 법과 학문의 대화

이상의 1심 판결을 반추하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앞서 밝혔듯이, 송두울 교수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저서, 기고, 및 강연 등의 내용이 실질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언컨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송두울 교수의 사상에 대한 심판이고, 그곳에서 이야기되는 그의 행위나 행위의 의도된 결과에 대한 범법사항을 입증하는 마지막 귀결은 언제나 그의 저술에서 드러난 그의 생각과 가치로 귀결될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판결문의 마지막으로부터 잠시 인용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북한 편향의 저술활동을 하여 왔으나 이미 우리 사회가 그로 인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성숙된 마당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아, 현재 독일 국적으로 일정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온 독일 교수 신분의 피고인을 우리 사회가 포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그 견해에 일면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고도 판단되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그간의 행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포용과 관용은 피고인이 그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객관적 입장에서의 학문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과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다



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03. 9. 21. 입국한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취한 태도는 이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형의 실행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우리는 법원이 1) 송두율 교수의 저술활동이 한국 사회에 더 이상 실질적인 정치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2) 그가 만약 사상적 전향이나 "진지한 반성"을 보였더라면 그의 범법 행위는 봐 줄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점, 3) "진정한 의미에서 객관적" 학술활동을 하라고 권고하는 점 등을 읽으며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한국이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성숙"하게 된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지, 법원이 바라는 "진지한 반성"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진정한 의미에서 객관적" 학술활동이라는 것은 누가 차후에 평가할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자에게 학문적 대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닌 신체의 자유 구속을 이유로 학문적 생각을 바꾸라는 것 이상의 폭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의 인용을 읽으며 절망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나긴 민주화 여정에서 획득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가치물인 신체, 거주 이전, 통신,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 그에 아울러 학문의 자유, 혹은 권리. 어쩌면 이 모든 가치들의 가장 크나큰 수혜자인 우리는 그 가치들이 단순히 누리기만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교훈을 실감합니다. 비록 지구의 반대편에서지만, 우리에게 들리는 송두율 교수의 구속과 실행선고는 이곳에서 과연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연구와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고, 이런 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또한 위에서 열거한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과 학문이, 그리고 나아가 국가와 학문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현금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법원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가장 손쉽게 각인시키는 방법은, 그리고 북한 체제에 대한 가장 뼈아픈 "내재적 비판"은, 바로 우리 체제가 여러 의견과 학문에 대해 관용할 줄 알고, 그래서 다양성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호소합니다. 그것이 백 명의 송두율을 가두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절의 서가 법과 학문이 대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첫단추였으면 하고 바라며, 법원의 책임있는 답변과 판결을 기다립니다.

#### 서명자 명단 (가나다 ABC 순)

- 강상훈, Environmental Sciences, University of Virginia.
- 강신아,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hicago.
- 강우진, Political Science, Florida State University.
- 강인선,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Rochester.
- 강정환,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 강주현, Political Science, Florida State University.
- 강현미, Media Art and Mass Communic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고아라, Plant Sciences, University of Arizona.
- 권미숙,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incinnati.
- 권혜원, Collective bargaining, Labor Law and History School of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Cornell University.
- 김경희, Architecture, University of Michigan.
- 김남수, Kinesiology and Health Education, University of Texas.



김덕홍, Political Science, Northwestern University.  
김동원, Pastor, Presbyterian Church (USA).  
김동주, Anthropology, University of Michigan.  
김두환,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김범수,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hicago.  
김상현, Sociology, University of Edinburgh, United Kingdom.  
김석준, Northwestern University.  
김석호,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김선철, Sociology, Columbia University.  
김성연, Political Science, SUNY at Stony Brook.  
김세영, Psychology, University of Pittsburgh.  
김소연, Cultur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김수연, Litera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김아름, Chemical and Materials Engineering, University of Cincinnati.  
김영일, 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김오민경, 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김재호, Michigan State University.  
김지영, School of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Chicago.  
김지영, Sociology, Harvard University.  
김지태,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Boyce Thompson Institute, Cornell University.  
김진석,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Texas.  
김태영, Chemistry,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김태호,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남태규, Chemistry, Vanderbilt University.  
노경덕, History, University of Chicago.  
노원균, Management Sciences & Accounting,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류덕현, Economics, Rice University.  
류재준, Master of Architecture, School of Architecture at Pratt in Brooklyn, New York.  
류영철, Urban and Regional Science, Texas A&M University.  
민태은,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Iowa.  
박성호,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박영아, Anthropology, Harvard University.  
박영준, Econo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박원호,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Michigan.  
박윤경,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 Syracuse University.  
박종희, Political Science,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박찬, Astronomy, University of Virginia.  
박치현, School of Civil Engineering, Purdue University.  
박현수, Urban Planning and Policy Development,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박형용, Urban Planning and Policy Development,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박혜연, International Affairs Graduate Program, Florida State University.  
박홍태, Political Science, SUNY at Albany.  
배병인,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Washington.  
배현희, Goldman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배희경, Michigan State University.  
백명호, Economics, University of Texas.

백종규,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서명삼, Divinity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서정민,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hicago.  
성기윤, Postdoctoral Fellow,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성정환, Philosophy, University of New Mexico.  
손재석,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손정원, Urban Planning,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송기영, Music, University of Texas.  
송지우, Philosophy/ Law, Harvard University.  
신희주, Sociology, University of Texas.  
심원목, Psychology, Harvard University.  
심태식, Asian Studies, University of Edinburgh, UK.  
안강현, Committee on Medical Physics, University of Chicago.  
안지연, City and Regional Planning, Cornell University.  
안현신, Art Theory and Criticism,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양민화, Special Education, University of Virginia.  
양승미, Epidemiology, University of Michigan.  
여운경, History, University of Washington.  
오승석,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Purdue University.  
유경수, Visiting Postdoctoral Researcher, Ecosystem Sciences Divis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유병선, Ethnic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유성상, Edu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유수빈, Political Science,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윤광일,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Michigan.  
윤준희, Civil Engineering, Purdue University.  
은종훈, Government, University of Texas.  
이광현, Education Policy, Michigan State University.  
이규상, City and Regional Planning, Cornell University.  
이두완,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hicago.  
이민아, Sociology, Purdue University.  
이범수, School of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이병재, Government, University of Texas.  
이상훈, Economics, University of Utah.  
이수현,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Michigan.  
이승주, Ph.D., Chemistry, Stanford University.  
이승준,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  
이요한,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이원재,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이윤경, Political Science, Duke University.  
이윤덕희,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School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이은형,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이중화,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Michigan.  
이철호, Urban Planning,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이현정, Anthropology,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이혜숙, Linguistics, Cornell University.



이희은, Communication Studies, University of Iowa.  
 정선희, Leisure Studie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정소연,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Texas.  
 정수현, Political Science, Florida State University.  
 정유리, Linguistic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정윤경, Computer Science,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정진영, Communic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정강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정현선, English, University of Virginia.  
 정현태, History and theory of architecture, Columbia University.  
 정혜주, Health and Public Policy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Johns Hopkins School of Public Health.  
 조민규,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y of Michigan.  
 조석주,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Rochester.  
 조성은, School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Library Studies,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조소연, Center for Neuroscience, University of Pittsburgh.  
 조현자, School of Social Work, Florida State University.  
 주병기, Assistant Professor, Economics, University of Kansas.  
 주일우, Darwin Colledge, Cambridge, UK.  
 주혜진, Sociology, Texas A&M University.  
 지병근, University of Missouri.  
 최윤정, Music, University of Chicago.  
 태재준, School of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Chicago.  
 한상정,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Michigan.  
 허남정, Physics,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허순임, School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홍은영, Reading, SUNY at Albany.  
 홍형택, Political Science, Columbia University.  
 강동희.  
 김재영.  
 심호현.  
 이동익.  
 Bae, Wonsun, Professor, Piano Performance, Duquesne University.  
 Byun, Young-Jin, Slavic Languages and Literatures depart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ha, Inhyok, Senior Staff Engineer, Inter Digital Communication Corp., Melbourne, Florida.  
 Cha, Seungyun, School of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MA), University of Chicago.  
 Cho, Eun Hye, Teaching, Learning and Culture, Texas A&M University.  
 Cho, Wonbin, Political Science, Michigan State University.  
 Cho, Woojeong,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Choi, Sang Ok,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Florida State University.  
 Han, JeongHu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Rochester.  
 Jo, Hyera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Michigan.  
 Joo, Hyun-ho,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University of Chicago.  
 Kang, Heon, Accounting, University of Hawaii.  
 Kang, Shin-Goo,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Rochester.

Kang, Youngchul, Chemical Materials Engineering, University of Cincinnati.  
Keum, Seung Hwan, Mechan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Michigan.  
Kim, Eun-sung,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Kim, Hee-Soo, Linguistics, University of Michigan.  
Kim, Jinsook,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Kim, Jongsoon, Agricultural Engineering, Texas A&M University.  
Kim, Jung,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Kim, Minsu,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Cornell University.  
Kim, So Young, Political Science, Northwestern University.  
Kim, Sunil,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Kwon, Soonwon, Visiting Researcher, Ohara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Hosei University (Japan) and School of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Cornell University.  
Lee, Eungkyoon, Environmental Policy Group, MIT.  
Lee, Jinho, Civil Engineering,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Lee, Jung Eun, MHRM,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Lee, Migil, Urban Planning, Columbia University.  
Lee, Mi-Jeong, Nutritional Sciences,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Lee, Seung Jung, 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Lee, Yun-Shik, Assistant Professor, Physics, Oregon State University.  
Namhee Lee, Linguis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ark, Yoon Jung, Nutritional Science, Cornell University.  
Ryu, Jaehyeo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Washington.  
Ryu, Si-Hyun, History, University of Michigan.  
Shin, Kiyong,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Washington.  
Shin, Mansoo, Post doctoral Research Associate, School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Cornell University.  
Son, Suyoung,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University of Chicago.  
Yang, Hyunjung, Structural Engineeri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Yang, Jung-Wo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Pittsburgh.  
Yi, Doogab,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Yoo, Sung Jin, Political Science, SUNY at Stony Brook.  
(이상 176명/5월31일)

**총두울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 송두올 교수 2심 3차 공판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

"현 시점에 이르러 국보법의 개폐를 지지하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대세로 정착하고 있다. 우리는 2심 재판부가 구시대적 논리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판결에 임함으로써 이런 시대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 기자회견 순서 ::

6월 16일 (수) 오후 1시 법원청사 정문 앞

1. 대책위 인사말 (권오현님)
2. 정정희여사 발언
3. 독일인권변호사 슐츠씨의 발언
4. 해외저명인사들이 노대통령께 보낸 공개성명서 서명 현황 소개
5. 대책위 성명서 낭독

송두올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아래의 성명서는 독일 학계를 명실상부하게 대표하는 세계적 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Juergen Habermas) 교수와 뮌스터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한스-위르겐 크리스만스키(Hans-Juergen Krismanzky) 교수가 공동 작성하고, 독일의 저명한 각계인사들이 서명한, 노무현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 성명서이다. 이 성명서가 일차로 47명이 서명한 후 5월 18일 노무현 대통령께 전달된 후 (노암 촘스키교수, 호워드 진 교수, 독일 펜클럽 의장 스트라스, 에곤 바르 교수 등이 이후에 추가서명해) 현재 총 79명 및 저널 페리페리 편집진 일동이 이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100 명

우리가 번역한 한글번역본과 독일에서 번역한 영어번역본입니다.

<한글번역본>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송두율교수에 대한 한국법정의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서

우리 서명자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적 발전 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해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성과 정의의 정신으로 자신의 사회를 근대화시켜온 대한민국의 시민들과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북한의 상호접근과 화해의 시기에도 냉전과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적 경계짓기의 어두운 시기에 기원하는 법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세계적으로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에 의거하여 송두율교수에게 7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분개합니다. 우리는 국제 엠네스티가 재판절차와 판결 이유에 대해 행한 자세한 비판을 지지합니다.

송두율교수는 군사독재에 대한 비판자로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37년 간이나 고국방문을 허락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 단체들의 초청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학문적 활동을 통해 열심히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고, 이로 인해 많은 위험을 감수해 온 사람으로서 귀국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학자인 독일시민이 내국정치적 싸움의 희롱물이 되었습니다. 그 판결[송교수에 대한 1심 유죄판결: 역자]로 인해 세계여론에서 한국의 명성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즉각적인 중지와 송두율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을 요구합니다.



<영어본>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r. Roh Moo-Hyun  
Statement concerning the conviction of Professor Du-Yul Song by a South Korean court based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We, the undersigned, welcome the significant progress in the democrat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ny of us know the country. We honor its citizens and their efforts for a modernization of their society in the spirit of humanity and justice.

The more we are taken aback that a law still finds application in a time of rapprochement and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ich originates from the darkest times of the cold war and the blind ideological demarcation: the National Security Law. This law is considered worldwide to be in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right.

We are appalled about the conviction of Professor Du-Yul Song to seven years prison on the basis of this law. We support the detailed criticism which amnesty international has practiced at the procedure of the trial and at the reasons for the verdict.

As a critic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Professor Song was not allowed to visit his homeland for 37 years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He returned, officially invited from democratic organiz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He returned as someone, who strove with his entire scientific work diligently for the reconcili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reby took on many risks.

An irreproachable scientist and a German citizen became the ball of struggles relating to domestic affairs. From this verdict large damage results to the reput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world public.

We therefore demand the immediate suspen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 immediate amnesty for Professor Du-Yul Song.

Dr. Achim Brunnengraber  
School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at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Prof. Dr. Gunter Best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HD Dr. Hans-Juergen Bieling  
Institute of Politology at the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Prof. Dr. Andreas Boeckh

Politics in Latin America and Development Theory, Institute of Politology at the University of Tübingen

Dr. Ulrich Brand

Globalization and Politics - Institute of Politology at the University of Kassel

Prof. Dr. Lothar Brock

Institute for Comparing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Johann-Wolfgang-Goethe-University Frankfurt

Dr. Hans Buchne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Coordination Group Germany

Hans Buttner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SPD)

Prof. Dr. Noam Chomsky,

Linguistics and Philosoph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of. Dr. Wolfgang Daubler

European Labor and Social Law at the University of Bremen

Prof. Dr. Frank Deppe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at the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Prof. Dr. Egon Bahr

Prof. Dr. Georges De Schrijver (emerit.)

Faculty of Theology,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Belgium

Dr. Ingolf Diener, maitre de conferences

Departement d'Anthropologie, Université de Paris VIII, France

Detlef Dzembitzki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SPD)

Prof. Dr. Marion Eggert

Institute of East Asia Sciences at the Ruhr-Universität Bochum

Ulrike Flach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FDP)

Prof. Dr. Johannes Floß

Biblical Theology at the Philosophical Institute of the RWTH Aachen

Gunter Grass

Writer, Nobel Prize Winner for Literature

Prof. Dr. Matthias Grundmann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 Executive Director

Prof. Dr. Jürgen Habermas

Philosophist

Volker Hamann

Development Economist

Dr. Hildegard Hamm-Brucher

Founding Chairperson of the Theodor-Heuss-Foundation

Mary Lou U. Hardillo-Werning

Chairperson of BABAYLAN - The Philippine Women's Network in Europe & Philippine Women's Forum e.V., Germany

Prof. Dr. Gerhard Hauck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Prof. Dr. Frida Haug

Hamburg University of Economics and Politics & Berlin Institute of Critical Theory

Prof. Dr. Wolfgang Fritz Haug

Institute of Philosophy of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Prof. Dr. Holger Heide

Director of SEARI (Social Economic Action Research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Bremen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of the 18. May-Institute at the Chonnam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inhold Hemker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SPD)

Prof. Jochen Hiltmann

University for Performing Arts Hamburg

Dr. Uwe Hoering  
Independent Journalist and Publicist

Prof. Dr. h. c. Heinz Holliger  
Oboist, composer and conductor, Freiburg Music College

Prof. Ursula Holliger  
Harfist, Freiburg Music College

AR Dr. Bernhard Hulsmann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Prof. Dr. Jorg Huffschnid  
Department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Bremen

Dr. Erhard Kamphausen  
Institute of Evangelical Theology at the University of Hamburg

Prof. Dr. Alexander Kluge  
Author and Movie Director, Johann-Wolfgang-Universität Frankfurt

Gerhard Koberlin  
Chairman of the German Asia Foundation, Essen and Director of Studies at the Academy of Mission at the University of Hamburg

Prof. Dr. Reinhart Koberler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Michael Korbmacher  
Editorial Staff of the Journal 'PERIPHERIE. Zeitschrift für Politik und Ökonomie in der Dritten Welt'

Prof. Dr. Hans-Jürgen Krysmanski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Joo-Hi Lee  
Politologist, Peace Researcher, Correspondent of 'The Korean NGO Times' in Germany

Simon Seoung-Wook Lee  
Clinical Supervisor and Head Researcher of Accommodation for Mental Health Society Inc.,



New Zealand

Prof. Dr. Ilse Lenz

Women and Social Structure Research at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at the Ruhr-Universität Bochum

Dr. habil. Henning Melber

Research Director of the Nordiska Afrikainstitutet/Uppsala, Sweden

Prof. Dr. Ulrich Menzel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at the Technical University Braunschweig

Dr. Heide Mertens

Editorial Staff of the Journal 'PERIPHERIE. Zeitschrift für Politik und Ökonomie in der Dritten Welt', Soest

Prof. Dr. Klaus Meschkat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University of Hannover

Prof. Dr. Erhard Meueler

Institute of Education at the Johannes-Gutenberg-University Mainz

PD Dr. Urs Müller-Plantenberg

Institute of Latin America at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Winfried Nachtwei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Grüne)

Prof. Dr. Norman Paech

Public Law at the University of Hamburg for Economics and Politics

Johannes Pflug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SPD)

Prof. Dr. Dieter Rucht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Berlin

Prof. Dr. Uta Ruppert

Institute of Comparing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Dr. Soussan Sarkhosh

Advisory Board Member of the Journal 'PERIPHERIE. Zeitschrift für Politik und Ökonomie in der Dritten Welt', Tehran, Iran

Prof. Dr. Christoph Scherrer  
School of Soci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Kassel

Prof. Dr. Ulrich Schiefer  
Instituto Superior de Ciências do Trabalho e da Empresa (ISCTE)  
Higher Institute for Labour and Business Studies  
Lisboa, Portugal

Werner Schulz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Grüne)

Prof. Dr. Wolfgang Seifert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at the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Prof. Dr. Christian Sigrist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Hyun-Sook Song  
Painter, Member of the Free Academy of Art Hamburg

Walter-Wolfgang Sparrer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Isang Yun Society e. V.

Prof. Roswitha Staeger  
Flutist, University of Arts Berlin

Christoph Strasser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SPD)

Prof. Dr. Johano Strasser  
Writer and President of the German P.E.N.

Hans-Christian Strobele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Grüne)

Christoph Terhecht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Forum of Young Movies of the Berlinale

Prof. Dr. Vladimir Tikhonov



Department of East European and Orient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Oslo, Norway

Dr. Uwe Timm  
Writer

Prof. Dr. Lieve Troch  
Systematic Theology at the Catholic University Nijmegen, The Netherlands

Dr. Gregor Freiherr von Furstenberg  
Vic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atholic Missionary Foundation missio e. V.

Rupert von Plottnitz  
Attorney at Law, former Minister of Justice in Hussia

Peter Wahl  
Member of Co-ordinating Committee, attac Germany

Dr. Heike Walk  
Science and Society Center at the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PD Dr. Henning Wasmus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alische Wilhelms-Universitat Munster

Dr. Rainer Werning  
Chairman of the Korea-Association e.V.

Prof. Dr. Hanns Wienold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alische Wilhelms-Universitat Munster

Prof. Dr. Brigitte Young  
Institute of Politology at the Westfalische Wilhelms-Universitat Munster

Prof. Dr. Howard Zinn  
Political Science at Boston University

Editorial Staff of the Journal 'PERIPHERIE. Zeitschrift fur Politik und Okonomie in der Dritten Welt'

## 2심 제3차 공판을 앞둔 우리의 견해

이 시점에 이르러 송두율교수에게 7년 징역형을 내린 1심 판결이 증거주의라는 근대적 사법판결의 원리를 무시하고, 학문·사상의 자유를 유린한 최악의 판결이었음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지니지 못한 황장엽의 말을, 그것도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 부터 전해 들었다는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 등은 송교수사건을 방청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독일인권변호사 솔츠씨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최대의 스캔들로 평가받을 만 하다. 나아가 송교수가 저술활동을 통해 북한을 위한 주도적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결한 것은 국보법 관련 판결 사상 학문·사상의 자유를 가장 심대하게 침해한 사례로서 꼽을만 하다.

이 기회에 우리는 2심재판부에게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의 우를 더 이상 범하기 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학문적 저술활동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학문의 법정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이지 사법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게다가 우리는 '내재적 이해에 기초한 내재적 비판'을 추구하는 송두율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이란 '차이의 인정에 기초한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탈근대적 학문연구'의 기본적인 연구방법론에 속한다는 점을, 나아가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평화지향적 통일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자 남한에 처음으로 '북한학다운 북한학'이 탄생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준 연구방법론으로서 의의를 지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 시점에 이르러 국보법의 개폐를 지지하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대세로 정착하고 있다. 우리는 2심 재판부가 구시대적 논리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판결에 임함으로써 이런 시대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4. 6. 16.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 송두올 교수 2심 결심공판 기자회견

"우리는 법과 학문이, 그리고 나아가 국가와 학문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현금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법원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가장 손쉽게 각인시키는 방법은, 그리고 북한 체제에 대한 가장 뼈아픈 "내재적 비판"은, 바로 우리 체제가 여러 의견과 학문에 대해 관용할 줄 알고, 그래서 다양성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호소합니다. 그것이 백 명의 송두올을 가두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질의서가 법과 학문이 대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첫단추였으면 하고 바라며, 법원의 책임 있는 답변과 판결을 기다립니다. (5월 31일 발표된 재외연구자성명에서)"

### :: 기자회견 순서 ::

6월 30일 (수)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 기자회견

1. 대책위 인사말
2. 정정희여사 발언
3. 독일인권변호사 슐츠씨의 발언
4. 해외저명인사들의 성명, 독일 여론 소개
5. 참석자 발언

송두올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아래의 성명서는 독일 학계를 명실상부하게 대표하는 세계적 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Juergen Habermas)교수와 뮌스터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한스-위르겐 크리스만스키(Hans-Juergen Krismansky)교수가 공동 작성하고,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저명한 각계인사들이 서명한, 노무현대통령께 보내는 공개 성명서이다. 이 성명서에는 현재까지 총 97명이 서명했습니다. 6/30 104110

송두울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 <한글번역본>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송두울교수에 대한 한국법정의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서

우리 서명자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적 발전 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해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성과 정의의 정신으로 자신의 사회를 근대화시켜온 대한민국의 시민들과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북한의 상호접근과 화해의 시기에도 냉전과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적 경계 짓기의 어두운 시기에 기원하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세계적으로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에 의거하여 송두울 교수에게 7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우리는 국제 엠네스티가 재판절차와 판결 이유에 대해 행한 상세한 비판을 지지합니다.

송두울 교수는 군사독재에 대한 비판자로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37년 간이나 고국방문을 허락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 단체들의 초청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학문적 활동을 통해 열심히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고, 이로 인해 많은 위협을 감수해 온 사람으로서 귀국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학자인 독일시민이 내국 정치적 싸움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 판결[송 교수에 대한 1심 유죄판결: 역자]로 인해 한국의 명성은 세계여론상에서 커다란 손상을 입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즉각적인 중지와 송두울 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을 요청 드립니다.

<서명자 명단: 영문번역본 참조>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r. Roh Moo-Hyun**  
**Statement concerning the conviction of Professor Du-Yul Song by a South Korean court based**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We, the undersigned, welcome the significant progress in the democrat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ny of us know the country. We honor its citizens and their efforts for a modernization of their society in the spirit of humanity and justice. -

The more we are taken aback that a law still finds application in a time of rapprochement and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ich originates from the darkest times of the cold war and the blind ideological demarcation: the National Security Law. This law is considered worldwide to be in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right.

We are appalled about the conviction of Professor Du-Yul Song to seven years prison on the basis of this law. We support the detailed criticism which amnesty international has practiced at the procedure of the trial and at the reasons for the verdict.

As a critic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Professor Song was not allowed to visit his homeland for 37 years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He returned, officially invited from democratic organiz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He returned as someone, who strove with his entire scientific work diligently for the reconcili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reby took on many risks.

An irreproachable scientist and a German citizen became the ball of struggles relating to domestic affairs. From this verdict large damage results to the reput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world public.

We therefore demand the immediate suspen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 immediate amnesty for Professor Du-Yul Song.

**Prof. Dr. Egon Bahr** *Адвокат в ГДР*  
Journalist and Politician

**Prof. Manuel Belo Moreira**  
Technical University of Lisbon, Portugal

**Prof. Dr. Gnter Best**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lische Wilhelms-Universitt Mnster

**HD Dr. Hans-Juergen Bieling**  
Institute of Politology at the Philipps-Universitt Marburg

**Prof. Dr. Andreas Boeckh**

Politics in Latin America and Development Theory,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Tübingen

**Prof. Dr. Dieter Boris**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Dr. Ulrich Brand**

Globalization and Politics -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Kassel

**Prof. Dr. Lothar Brock**

Institute for Comparing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Johann-Wolfgang-Goethe-Universität Frankfurt

**Dr. Achim Brunnengrber**

School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at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Dr. Hans Buchne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Coordination Group Germany

**Hans Böttner**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SPD)

**Prof. Dr. Ahmet Cakmak**

Department of Economics, IIBF, Marmara University, Istanbul, Turkey

**Prof. Dr. Noam Chomsky**

Linguistics and Philosoph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SA

**Prof. Dr. Wolfgang Dubler**

European Labor and Social Law at the University of Bremen [http://www.mels.uni-bremen.de/leben\\_daebler.html](http://www.mels.uni-bremen.de/leben_daebler.html)

**Prof. Dr. Frank Deppe**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at the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Prof. Dr. Georges De Schrijver (emerit.)**

Faculty of Theology,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Belgium

**Dr. Ingolf Diener, maître de conférences**

Département d'Anthropologie, Université de Paris VIII, France



**Detlef Dzembitzki**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SPD)

**Prof. Dr. Marion Eggert**

Institute of East Asia Sciences at the Ruhr-Universität Bochum

**Dr. Philomena Fischer**

Department of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USA

**Ulrike Flach**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FDP)

**Prof. Dr. Johannes Flo**

Biblical Theology at the Philosophical Institute of the RWTH Aachen

**Prof. Dr. William H. Fried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USA

**Ralf Fcks**

Chairperson of the Heinrich Bll Foundation

**Prof. Dr. h.c. mult. Johan Galtung**

Peace Studies & Director of TRANSCEND: A Peace and Development Network, Norway

**Gnter Grass**

Writer, Nobel Prize Winner for Literature

**Prof. Dr. Matthias Grundmann**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Executive Director

**Prof. Dr. Jürgen Habermas**

Philosopher

**Volker Hamann**

Development Economist

**Dr. Hildegard Hamm-Brcher**

Founding Chairperson of the Theodor-Heuss-Foundation

**Mary Lou U. Hardillo-Werning**

Chairperson of BABAYLAN - The Philippine Women's Network in Europe & Philippine Women's Forum e.V., Germany

**Prof. Dr. Gerhard Hauck**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Prof. Dr. Frigga Haug**

Hamburg University of Economics and Politics & Berlin Institute of Critical Theory

**Prof. Dr. Wolfgang Fritz Haug**

Institute of Philosophy of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Prof. Dr. Holger Heide**

Director of SEARI (Social Economic Action Research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Bremen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of the 18. May-Institute at the Chonnam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inhold Hemker**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SPD)

**Prof. Jochen Hiltmann**

University for Performing Arts Hamburg

**Dr. Uwe Hoering**

Independent Journalist and Publicist

**Prof. Dr. h. c. Heinz Holliger**

Oboist, composer and conductor, Freiburg Music College

**Prof. Ursula Holliger**

Harfist, Freiburg Music College

**AR Dr. Bernhard Hlsmann**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Prof. Dr. Jrg Huffschmid**

Department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Bremen

**Dr. Erhard Kamphausen**

Institute of Evangelical Theology at the University of Hamburg

**Prof. Dr. Alexander Kluge**

Author and Movie Director, Johann-Wolfgang-Universität Frankfurt



**Gerhard Kberlin**

Chairman of the German Asia Foundation, Essen and Director of Studies at the Academy of Mission at the University of Hamburg

**Prof. Dr. Reinhart K ele**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lische Wilhelms-Universitt Mnster

**Michael Korbmacher**

Editorial Staff of the Journal 'PERIPHERIE. Zeitschrift fr Politik und konomie in der Dritten Welt'

**Prof. Dr. Hans-Jrgen Krysmanski**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lische Wilhelms-Universitt Mnster

**Joo-Hi Lee**

Politologist, Peace Researcher, Correspondent of 'The Corean NGO Times' in Germany

**Simon Seoung-Wook Lee**

Clinical Supervisor and Head Researcher of Accommodation for Mental Health Society Inc., New Zealand

**Prof. Dr. Ilse Lenz**

Women and Social Structure Research at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es at the Ruhr-Universitt Bochum

**Dr. habil. Henning Melber**

Research Director of the Nordiska Afrikainstitutet/Uppsala, Sweden

**Prof. Dr. Ulrich Menzel**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at the Technical University Braunschweig

**Dr. Heide Mertens**

Editorial Staff of the Journal 'PERIPHERIE. Zeitschrift fr Politik und konomie in der Dritten Welt', Soest

**Prof. Dr. Klaus Meschkat**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University of Hannover

**Prof. Dr. Erhard**

Meueler Institute of Education at the Johannes-Gutenberg-University Mainz

**Gnter Minnerup**

School of History at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Walter Momper**

President of the Parliament of Berlin & former Mayor Berlin

**PD Dr. Urs Miller-Plantenberg**

Institute of Latin America at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Ananya Mukherjee**

Environmental Sociologist, University of Reading, UK

**Winfried Nachtwei**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Grüne)

**Prof. Dr. Wolf-Dieter Narr (emerit.)**

Otto-Suhr-Institut für Politikwissenschaft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Prof. Dr. Norman Paech**

Public Law at the University of Hamburg for Economics and Politics

**Johannes Pflug**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SPD)

**Prof. Luis Sandoval Ramirez**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Economicas,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Mexico

**Prof. Dr. Dieter Rucht**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Berlin

**Prof. Dr. Uta Ruppert**

Institute of Comparing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Dr. Soussan Sarkhosh**

Advisory Board Member of the Journal 'PERIPHERIE. Zeitschrift für Politik und Ökonomie in der Dritten Welt', Tehran, Iran

**Prof. Dr. Christoph Scherrer**

School of Soci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Kassel

**Prof. Dr. Ulrich Schiefer**

Instituto Superior de Ciências do Trabalho e da Empresa (ISCTE)  
Higher Institute for Labour and Business Studies



Lisboa, Portugal

**Werner Schulz**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Grüne)

**Prof. Dr. Wolfgang Seifert**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at the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Prof. Dr. Christian Sigrist**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Hyun-Sook Song**

Painter, Member of the Free Academy of Art Hamburg

**Walter-Wolfgang Sparrer**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Isang Yun Society e. V.

**Prof. Roswitha Staeger**

Flutist, University of Arts Berlin

**Christoph Strasser**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SPD)

**Prof. Dr. Johano Strasser**

Writer and President of the German PEN.

**Hans-Christian Ströbele**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Grüne)

**Christoph Terhecht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Forum of Young Movies of the Berlinale

**Prof. Dr. Vladimir Tikhonov**

Department of East European and Orient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Oslo, Norway

**Dr. Uwe Timm**

Writer

**Prof. Dr. Lieve Troch**

Systematic Theology at the Catholic University Nijmegen, The Netherlands

**Dr. Gregor Freiherr von Frstenberg**

Vic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atholic Missionary Foundation missio e. V.

**Prof. Dr. Carl Friedrich von Weizscker**

Physicist and Philosopher

**Rupert von Plottnitz**

Attorney at Law, former Minister of Justice in Hestia

**Prof. Jos Vericat**

Facultad CC. PP. y Sociologa, Universidad Complutense, Madrid, Spain

**Wolfgang Vieweg**

Sound Engineer, Universitt der Knste Berlin

**Peter Wahl**

Member of Co-ordinating Committee, attac Germany

**Dr. Heike Walk**

Science and Society Center at the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PD Dr. Henning Wasmus**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lische Wilhelms-Universitt Mnster

**Dr. Rainer Werning**

Chairman of the Korea-Association e.V.

**Prof. Dr. Hanns Wienold**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lische Wilhelms-Universitt Mnster

**Prof. Dr. Brigitte Young**

Institute of Politology at the Westflische Wilhelms-Universitt Mnster

**Prof. Hans Zender**

Composer and Conductor

**Prof. Dr. Howard Zinn**

Political Science at Boston University, USA

Editorial Staff of the Journal 'PERIPHERIE. Zeitschrift fr Politik und konomie in der Dritten Welt':

Peter Ay, Elke Grawert, Jrg Handrack, Gerhard Hauck, Detlev Haude, Wolfgang Hein, Uwe Hoering, Olaf Kaltmeier (verantwortlich.), Reinhart K eler, Heide Mertens, Theo Mutter, Michael Ramminger, Ulrike Schult



## 위기의 교수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 2004년 6월 19일자)

사회학자이자 독일국민인 송두을 교수가 한국 구치소에서 혹독한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에서 정치수들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환경 하에 구류되어 있게 된다. 한국 법원이 송두을 사회학 교수에게 대하는 예를 보면, 이는 독일국민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 59세의 지식인은 국제사면위(Amnesty International)에 의해 '비폭력 양심수'로 선정되었고, 피서 독일 외무부 장관도 그를 위해 한국 정부에 수 차례에 걸쳐 의견을 피력한 바 있지만, 그는 한국에서 마치 중죄인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독일 통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남북한 화해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송교수에게, 북한과의 접촉은 명예가 되어 돌아왔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 결과, 송교수는 7년 형을 선고 받았다.

송교수가 8개월 전부터 수감되어 있는 1평 남짓한 구치소 감방에는, 그를 방문한 친지들에 따르면, 눈부신 네온전등이 24시간 켜 있다고 한다. 게다가 그가 위치한 서울 구치소 2층 감방은 천장이 낮아서, 낮 동안 태양열이 내리쬐면 사우나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실내온도가 치솟는다고 한다. 절친한 친구로서 송교수를 면회한 타이치로 카지무라씨는 "고온과 모기 때문에 송교수는 지칠 대로 지쳐있다"고 말했다. 특히 책상도, 의자도 없어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 석학 유르겐 하버마스를 사사한 송교수는 저술을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감방 안에는 얇은 담요 한 장을 제외하고는 갖추어진 것이 전혀 없다. 그나마 그 담요도 주간에는 말아놓고, 변소로 쓰이는 구멍 바로 옆 맨 바닥에 앉아 있어야 한다." 송교수의 장남 송 준은 말한다. "아버지는 37년동안 독일에서 사시느라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데 익숙하지 못하십니다. 이제는 허리 통증이 생기셔서, 선 자세가 아니면 책을 읽을 수 없으십니다."

현재 한국에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마치 중세시대 종교재판을 보는 듯 했습니다." 고 베를린 변호사 협회를 대표하여 재판 참관 차 서울에 온 독일 변호사 에버하르트 술츠는 말했다. 재판정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었지만, 공판 내용을 보건대, '정치적 재판'임에는 틀림없었다고 한다. 또, 송교수를 북한 공산당 추종자로 그려내기 위해 그의 학문 저술 내용이 계속하여 인용되었다고 한다. 변호사 술츠는 "이것은 학문 및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항소심 판결은 7월 중순에 내려질 예정이다.

[작성자: 헨리 보르크]

Professor in Not (Sueddeutsche Zeitung, 19.06.2004)

Professor in Not

Der Soziologe und deutsche Staatsbürger Song Du Yul leidet unter den harten Bedingungen im sudkoreanischen Gefängnis

Politische Gefangene müssen in Südkorea mit äußerst harten Haftbedingungen rechnen. Das gilt auch für deutsche Staatsbürger, wie der Umgang der sudkoreanischen Justiz mit dem Soziologieprofessor Song Du Yul aus Münster beweist. Der 59-jährige Gelehrte, der von Amnesty International als „gewaltloser politischer Gefangener“ anerkannt worden ist und für den sich Außenminister Joschka Fischer schon mehrmals bei der Regierung in Seoul eingesetzt hat, wird dort wie ein Schwerverbrecher behandelt.

Song, der sich nach dem Erlebnis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für die Annäherung zwischen Nord- und Südkorea eingesetzt hat, werden seine Kontakte zu Nordkorea zur Last gelegt. Die sind nach dem Nationalen Sicherheitsgesetz in Südkorea strafbar. Er wurde zu sieben Jahren Haft verurteilt.

Song Du Yul ist seit acht Monaten in einer drei Quadratmeter großen Zelle eingesperrt, in der nach Angaben von seinen Freunden und Verwandten, die ihn besuchen durften, rund um die Uhr grelles Neonlicht brennt. Weil die Zelle im ersten Stock des Gefängnisses von Seoul direkt unter einem Flachdach liegt, werde sie tagsüber von der Sonne auf Saunatemperaturen aufgeheizt. „Die Hitze und die Mücken machen Professor Song sehr zu schaffen“, sagt Taichiro Kajimura, ein Freund der Familie, der Song kürzlich besuchen konnte. Besonders leide Song darunter, weder einen Stuhl, noch einen Tisch zu haben. Der Professor, der bei Jürgen Habermas promoviert hat, würde gerne schreiben. Doch die Zelle ist bis auf eine dünne Schlafdecke unmobiliert. Tagsüber müsse Song die Decke aufrollen und dürfe nur auf dem blanken Boden sitzen, direkt neben einem Loch, das als Toilette dient. „Mein Vater ist nach 37 Jahren in Deutschland nicht mehr daran gewohnt, wie die Koreaner im Schneidersitz zu sitzen. Er hat inzwischen so starke Rückenschmerzen, dass er nur noch im Stehen lesen kann“, sagt sein Sohn Dschun Song.

Derzeit läuft die Berufungsverhandlung. „Ich fühle mich hier an die mittelalterliche Inquisition erinnert“, sagt der deutsche Rechtsanwalt Eberhard Schultz, der im Auftrag der Berliner Rechtsanwaltskammer als Prozessbeobachter nach Seoul gereist ist. Die Atmosphäre im Gerichtssaal sei zwar relativ zivilisiert, so Schultz, aber dem Inhalt nach handele es sich „eindeutig um einen politischen Prozess“. Immer wieder werde aus den wissenschaftlichen Schriften Songs zitiert, um ihn als Sympathisanten der Kommunisten im Norden darzustellen, so Schultz. „Das verstößt eindeutig gegen die Wissenschafts- und Meinungsfreiheit“, sagt der deutsche Rechtsanwalt. Mit dem Urteil in der Berufungsverhandlung wird Mitte Juli gerechnet. Henrik Bork